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4/2564 호

디지털 기술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위한 조치

조직 및 생산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수요를 이끌어내어 확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기위한 국내 디지털 산업 기반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위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6항, 18항, 31항에 따라 투자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을 알림

1. 위 조치는 이전에 투자촉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촉진위원회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받은 업종이어야하며 투자촉진위원회에서 투자촉진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활동범주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는 제외를 함
2. 이미 투자 촉진을 받고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에 대한 권리와 혜택이 만료가 되는날이 되었을때 규정에 맞게 권리와 혜택에 대한 투자촉진 요청을 할수있음
3. 투자금액의 규모는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투자 규모가 100만 바트 이상이어야하며 중소기업(SMEs)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규모가 토지 및 순환 자본의 비용을 제외하고 50만 바트이상 이어야함
4. 중소기업(SMEs)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3번 항목의 여건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함
 - 4.1 투자촉진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받지 않은 사업에 관계없이 투자촉진 신청자의 모든 합산 소득은 연간 5억바트를 넘지 않아야하며 이는 처음 수익을 내기 시작한 날로부터 첫 3년을 기준으로 삼음
 - 4.2 투자등록을 한 지분의 경우 태국 국민이 자본의 51%이상을 보유해야 함
5.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기준 설정을 기반으로 한 다음과 같은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함
 - 5.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조직내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INTEGRATED)을 사용하여 조직 외부와 연결(CONNECTED)하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내부 및 외부 연결고리를 통해 최소 3개의 기능을 연결하여 자원관리를 하는 기능 도입
 - 5.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AI)기계의 MACHINE LEARNING을 통해 BIG DATA 또는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을 사용하는것을 정함
 - 5.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NATIONAL E-PAYMENT와 같은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는등의 회사내에서의 공개 온라인 시스템등을 사용하는것을 정함
6. 5.1항목과 5.3항목의 경우 개발 혹은 개선될 프로그램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태국에서 인증받은

기업과 관련된 부서로부터의 투자가 있거나 비용이 있어야함

7.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대한 투자 가치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계산을 함

7.1 다음 항목에 대한 투자 또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산함

7.1.1 프로그램 또는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이나 사용 비용은 5.1항목과 5.3항목에 따라개발 혹은 개선될 부분의 비용에 있어서는 국내의 관련 기업이나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함

7.1.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AI)기계의 MACHINE LEARNING을 통해 BIG DATA 또는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을 사용한 투자금이나 사용 비용은 5.2 항목을 따름

7.1.3 태국에서 CLOUD 또는 DATA CENTER 서비스 대여 및 사용 비용

7.2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 또는 사용 비용의 절반을 계산함

7.2.1 프로그램 또는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이나 사용 비용은 5.1항목과 5.3항목에 따라개발 혹은 개선될 부분의 비용에 있어서는 국내의 관련 기업이나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7.2.2 해외에서 CLOUD 또는 DATA CENTER 서비스 대여 및 사용 비용

8. 권리와 혜택은 다음과 같음

8.1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업장과 같은 곳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총 투자금액의 규모에서 토지 및 순환 자본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3년간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8.2 법인세 면제 기간은 투자촉진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함

9. 투자촉진 신청서는 2022년 마지막 영업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사업 시행은 신청서 발급 이후 3년 이내에 시작해야함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

2021년 3월 19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